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8. 5. 27.

교육사회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5. 19 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 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문화원의 설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자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4절 제명을 “충청북도학생회관”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함(안 제4절)
-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설치함(안 제17조제1항)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둠(안 제17조제2항)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의 사무를 정함(안 제19조)
 -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 (5)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6조, 제26조제1항, 제28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III.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조례안 개정사유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위치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이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현행 충북학생회관과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목적과 업무를 정하는 것이며,
-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명칭에 대하여

- 당초에는 가칭)충북바이오교육회관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충북학생교육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을 선정하였음
- 이에 따라 기관의 명칭 선정 시 각계 각종의 의견수렴 여부, 설문조사 실시여부 등 명칭선정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 체제에 대하여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도교육청 소관의 충북 학생교육문화원과 충북도 소관의 충북바이오전시관 등 이원화 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이원화 체제에서 시설물의 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원의 위치가 상당구 영동, 주중동, 내덕1동 등 3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능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기구 및 인력운용

- 먼저, 기구운영과 관련하여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이 현행의 충북학생회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들 통합운영의 장·단점, 그리고 현행의 기구와 개정의 기구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인력 운용 면에 있어서는 원장의 직급, 인력증원의 확보방안, 그리고 교육문화원의 위치별(상당구 영동, 주중동, 내덕1동) 3곳에 대한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제규칙**」에 포함할 사항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 · 제23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9조중 "법
제34조"를 각각 "법 제3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4조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를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기"로 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 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다만, 학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절의 제목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서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을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별표 1중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를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p> <p>제17조(설치) ①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 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 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 도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p>	<p>제4절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p> <p>제17조(설치) ①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 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 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 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p> <p>②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 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다만, 학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둈다.</p>
<p>제18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p>	<p>제18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 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9조(업무) 학생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의 문예 및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 2. 도서실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교육 문화활동 전개 4.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에 필요한 사항 5.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 	<p>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 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 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현 행	개 정 안
<u>체험관 운영</u>	<u>5. 기타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제20조(설치) ① <u>법 제34조</u>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설치) ① <u>법 제32조</u>
제23조(설치) ① <u>법 제34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 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설치) ① <u>법 제32조</u>
제7절 <u>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 실습소</u>	제7절 <u>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 실습소</u>
제26조(설치) ① <u>법 제34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설치) ① <u>법 제32조</u> 의
 <u>전문계고등학교</u>

 <u>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u>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 (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부칙 <제8069호, 2006.12.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4.12 대통령령 제20003호]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부칙 <제20003호, 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도서관법」 [전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②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부칙 <제8029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